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41

발의연월일: 2024. 7. 29.

발 의 자:민홍철・이재정・문대림

조 국・이기헌・윤종군

염태영 • 이소영 • 양문석

김준혁 • 이건태 • 김영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이하 "광역교통위원회")의 업무 범위에는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, 광역교통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심의·조정하는 업무도 포함됨.

그런데 광역교통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·조정할 수 있는 업무에 교통 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'광역교통 통합요금제'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소지가 큰 사무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·조정 업무에 광역교통요금 및 환승요금 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광역교통 통합요금제의 확대·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2항제6호다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항제6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광역교통의 요금 및 광역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요금 체계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8조(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	제8조(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			
설치 등) ① (생 략)	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	2			
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			
1. ~ 5의3. (생 략)	1. ~ 5의3. (현행과 같음)			
6.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	6			
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				
상호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				
는 다음 각 목의 광역교통 사				
항에 관한 심의·조정				
가.・나. (생 략)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			
<u><신 설></u>	다. 광역교통의 요금 및 광역			
	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			
	요금 체계에 관한 사항			
<u>다.</u> (생 략)	<u>라.</u> (현행 다목과 같음)			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	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	